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1. 개정이유

천재지변, 화재, 침수 등으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시검사를 명하도록 하여 차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「자동차관리법」을 개정하였음.

이에, 법 개정안에서 위임하는 천재지변·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천재지변, 화재, 침수 등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(안 제63조제4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
1. 천재지변·화재 또는 침수 사유로 정비한 피보험자동차 중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하지 아니한 자동차
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 중 천재지변·화재 또는 침수 사유로 손해를 보상받은 자동차
3. 천재지변·화재 또는 침수 사유로 도로 등에 방치된 자동차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63조(점검·정비·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3조(점검·정비·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</u> <u>1. 천재지변·화재 또는 침수 사유로 정비한 피보험자동차 중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하지 아니한 자동차</u> <u>2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된 자동차 중 천재지변·화재 또는 침수 사유로 손해를 보상받은 자동차</u> <u>3. 천재지변·화재 또는 침수 사유로 도로 등에 방치된 자동차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58